

자산보관 위탁계약서

(주)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갑"이라고 함)와 (주)우리은행(이하 "을"이라고 함)은 "갑"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관업무(이하 "자산보관"이라 한다)를 "을"에게 위탁하고 "을"은 이를 수탁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산보관위탁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고 함)을 체결한다.

제 1 절 총 칙

제 1조 (목적)

본 계약은 "을"이 "갑"의 위탁을 받아 자산보관 업무 및 자산보관 업무에 한정된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 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.

- "위탁자산"은 "갑"의 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액 또는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부동산, 권리, 현금, 증권 기타 재산으로서 "갑"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.

- "일반사무수탁회사"라 함은 "갑"과의 일반사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,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

- "자산관리회사"이라 함은 "갑"과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"갑"의 자산의 투자 및 운용과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
- "판매회사"라 함은 "갑"과의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 "갑"이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

- "관련 수탁회사"라 함은 "갑"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"갑"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.

하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회사를 말한다.

- "자산보관계좌"라 함은 "을"이 "갑"이 취득한 증권을 보관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"갑" 명의로 한국에 탁재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.

- "위탁계좌"라 함은 "을"이 "갑"이 취득한 현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"갑" 명의로 "을"의 지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.

- "본건 부동산"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95번지 2431호의 장기전 세입대주택 및 현물을자로 출자월 19호의 장기전세입대주택으로서 총 2,450호의 별지 1 기체 부동산을 의미한다.

- "증권"이라 함은 차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증권을 말한다.

제 2 절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

제3조 (위탁업무의 범위)

- "갑"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"을"에게 위탁하며, "을"은 "갑" 또는 자산관리회사(이하 "갑 등"이라 한다)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부동산의 보관 가. "갑"이 "을"에 대하여 보관을 위탁하는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, 지상권, 임차권의 보존 및 관리

- "갑"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처분나. 본건 계약체결 및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청료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및 등기권리의 기재사항 변경(근저당권 설정 등) 업무다. 본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의 판매(근저당권 설정 등) 업무라.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로서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

부동산관리의 책임 및 범위

2

1. 위탁자

- ① 본건 부동산의 취득, 개발, 처분과 관련한 계약 체결
 -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,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징수 등의 임대차 관리
 - ③ 시설유지, 청소, 방역, 경비, 보수, 화재보험가입 등 본건 부동산의 보존
 - ④ 수익금 관리 및 운용 차시
 - ⑤ 본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세 공과금 등의 납부
 - ⑥ 수탁자가 이행하는 관리업무를 제외하는 일체의 관리 업무

수학자

- ① 등기부상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
 - ② 위탁자의 의사 및 자산관리회사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관리 및 제3자에 대한 등기 이전 등의 이행시 신탁도기 해지